

의안번호	제 274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10월 6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4
----------	-----

제출연월일 : 2008년 10월 6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우리 道 조직개편(2008. 7. 1.)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 “혁신담당관”을 “성과관리담당관”으로,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경제정책팀”을 “경제정책과”로, “전략산업팀”을 “전략산업과”로, “기업지원팀”을 “기업지원과”로 변경

□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기업지원과)

-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정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51조 외 개별법

4. 조 례 안 : 불 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불 임

6. 관련법령 발취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 간 위 탁 사 무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성과관리 담당관	1	○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정보화 담당관	2	○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영상콘텐츠 제작·공급 -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 홍보 -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	(재단법인)충청북도 지식 산업진흥원	지방자치법 제104조
경제정책과	3	○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 위자에 대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 지사	기능장려법 제1조, 제3조 제15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전략산업과	4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	과학기술관련법인	지역균형개발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
	5	○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 도 공예품경진대회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기업지원과	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	청주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	지역균형개발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
	7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다만,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동법시행령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민간위탁사무

현행					개정안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 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대상 실과	일련 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혁 신 담당관	1	(생략)			성과관리 담당관	1	(현행과 같음)		
정보통신 담당관실	2	(생략)			정보화 담당관	2	(현행과 같음)		
경제정책팀	3	(생략)			경제정책과	3	(현행과 같음)		
전략산업팀	4	(생략)			전략산업과	4	(현행과 같음)		
	5	(생략)				5	(현행과 같음)		
기업지원팀	6	(생략)			기업지원과	6	(현행과 같음)		
	7	○산업단지 관리권 한에 관한 사항 · 청주지방산업단지 · 현도지방산업단지 · 부용지방산업단지 · 대소산업단지 · 대풍지방산업단지 · 오창과학산업단지 (공단임대사무 포함)	청주지방산업단 지관리공단 현도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회 부용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회 대소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회 대풍지방산업단 지입주기업체협 의회 오창과학산업단 지관리공단	산업집적활 성화및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7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다만 오창과학산업단 지는 임대사무 를 포함한다.)	산업단지관리공 단 또는 입주기 업체협의회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 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 조 동법 시 행령 제5조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1조 (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5.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리권자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③~⑤ (생략)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등)①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

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⑤(생략)

⑥관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법 제2조제8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 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

1. 도로·환경오염방지시설·용수공급시설·정보통신시설·에너지공급시설 기타의 공공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37조의2(관리업무의 위탁) ①관리권자가 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